

# 서 면 답 변 서

소 속	평 창 군 의 회	질문위원	( 이 범 연 ) 위 원
답 변 자	평 창 군 수 ( 채 정 희 과 장)	일 자	질의 2016년 12 월 15 일 답변 2016년 12 월 16 일
회 의	제224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( 5 )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		

## 질문요지

- 산후 돌봄 지원 사업 전반사항

## 답변내용

- 이범연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.

### □ 배경

- 2015년 합계출산율(강원도) : 1.31명(전국 1.24명) → 평창군 : 1.12명  
\* 조출생률(인국 1천명당 출생아수) : 전국 최하위
- 가임연령(20~39세) 여성인구의 지속적인 감소
- 현재의 평창군 : 향후 소멸위험지역으로 평가됨 <2015년>  
\* 소멸위험지역 : 20~39세 가임연령인구와 65세이상 노인인구의 상대비가 0.5이하인 지역

구분	홍천	횡성	영월	평창	정선	고성	양양	도 전체
전체인구	-2.1	2.7	-5.5	-4.4	-14.2	-6.8	-6.3	1.1
가임여성인구	-27.1	-28.1	-33.1	-34.3	-41.1	-15.3	-34.0	-19.9

〈최근 10년간 인구증감률〉

- 2017년은 저출산 극복 원년의 해로, 결혼·출산·양육 친화적 환경조성 추진  
→ 5개분야, 31개사업
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경감 사업
  - **2017년 강원도의 역점 추진 시책**
  - 2017년 신규사업 추진계획 및 세부 매뉴얼 배포 : 2017년 1월
  - 2016년 11월 협의요청되어 2017.1.1. 시행 예정

### □ 목적

출산 후 산후관리를 위한 건강관리사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산모·신생아의 건강 회복 및 양육에 기여

□ 사업개요

- 사업명 : 산후돌봄 지원사업
- 근거
  -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
  - 모자보건법 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
  - 저출산 고령화사회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(경제적 부담의 경감)
- 사업비 : 59,860천원(도비 29,930 군비 29,930)
- 지원대상 :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 출산가정
- 내 용
  -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시 본인부담금 1인 최대 20만원 지원
  - 큰아이 돌봄 등 부가서비스 이용료 1인 최대 13만원 지원
  - 임신부 건강관리비 지원 : 첫째 10만원, 둘째 20만원

□ 산출근거

-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
  - 본인부담금 지원 200,000원×100명 = 20,000,000원
  - 부가서비스 지원 13,000원×62명×10일 = 8,060,000원
- 임신부 건강관리비 지원
  - 첫째 100,000원× 98명 = 9,800,000원
  - 둘째 200,000원×110명 = 22,000,000원

□ 2016년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업

- 기본지원 :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80%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
→ **2017년 중위소득 100% 이하로 확대 추진계획**
  - ※ 임신 만 4개월 경과 후 발생한 유산·사산의 경우도 포함
-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
  - 희귀난치성질환 산모,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
  - 쌍생아 이상 및 셋째 아 이상 출산 가정
  - 새터민 산모, 결혼이민 산모, 미혼모 산모
  - 기준중위소득 100%이하 출산 가정
- 지원 실적 : 52명(2016. 11월말 기준)

□ 201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(기본형)

(단위:원)

구분	서비스가격	소득구간 (기준중위소득)	유형	정부지원금	본인부담금	지원 기간
단태아	800,000	50%이상	A-가	600,000	200,000	10일
		50%초과~60%이하	A-나	570,000	230,000	
		60%초과~80%이하	A-다	520,000	280,000	
		80%초과(예외지원)	A-라	450,000	350,000	
쌍생아	1,440,000	50%이상	B-가	1,098,000	342,000	15일
		50%초과~60%이하	B-나	1,035,000	405,000	
		60%초과~80%이하	B-다	936,000	504,000	
		80%초과(예외지원)	B-라	810,000	630,000	
삼태아 이상, 중증장애 산모	2,140,000	50%이상	C-가	1,620,000	520,000	20일
		50%초과~60%이하	C-나	1,530,000	610,000	
		60%초과~80%이하	C-다	1,400,000	740,000	
		80%초과(예외지원)	C-라	1,200,000	940,000	

□ 201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(프리미엄)

(단위:원)

구분	서비스가격	소득구간 (기준중위소득)	유형	정부지원금	본인부담금	지원 기간
단태아	860,000	50%이상	A-가	600,000	260,000	10일
		50%초과~60%이하	A-나	570,000	290,000	
		60%초과~80%이하	A-다	520,000	340,000	
		80%초과(예외지원)	A-라	450,000	410,000	
쌍생아	1,500,000	50%이상	B-가	1,098,000	402,000	15일
		50%초과~60%이하	B-나	1,035,000	465,000	
		60%초과~80%이하	B-다	936,000	564,000	
		80%초과(예외지원)	B-라	810,000	690,000	
삼태아 이상, 중증장애 산모	2,200,000	50%이상	C-가	1,620,000	580,000	20일
		50%초과~60%이하	C-나	1,530,000	670,000	
		60%초과~80%이하	C-다	1,400,000	800,000	
		80%초과(예외지원)	C-라	1,200,000	1,000,000	

※ 프리미엄 추가 서비스 : 배우자 세탁물 관리, 큰아이 어린이집 등하교

[붙임] 도 사업계획

**1 산후돌봄지원(본인부담금지원, 부가서비스제공)**

구 분		주요 내용
시행일 / 협의요청일		2017. 1. 1 / 2016. 11월
신설 필요성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2015년 강원도 합계출산율은 1.310으로 인구가 유지되기 위한 인구대체수준인 2.1명에는 크게 못 미치는 상황으로 실효성있는 출산율 제고 정책의 시행 시급.</li> <li>- 현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에 대한 본인부담금 일부비용을 지원하여 출산전후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고자 함.</li> </ul>
관련규정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</li> <li>- 모자보건법 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</li> <li>-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(경제적 부담의 경감)</li> </ul>
지원 대상	선정기준	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
	대상규모	3,200명 → 2017년(개정): 기준중위소득 100%이하 출산가정
지원 내용	지원유형	현물지급
	지원수준	본인부담금 일부비용 지원 (최대 20만원지원, 20만원 이하 :본인부담금액 90%지원, 10%자부담)
전달 체계	지원절차	산모신생아 서비스 완료 후 신청(대상자) → 신청서 접수 및 검토(보건소) → 본인부담금 지원(보건소) ※ 신청서류 : 신청서, 서비스이용 영수증 원본, 통장사본
	수행기관	신청 : 관내 보건소
소요 재원	총규모	매년 926백만원
	재원별 규모	지방비(도비 50%, 시군비 50%)
유사 제도	유사제도 현황	- 없음
	연계 방안	- 없음
사회보장정보 시스템 활용	필요 정보	국고 지원을 통해 동일 또는 유사한 급여 서비스를 받은 자
	연계 방안	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으로 중복서비스 지원여부 확인